

新羅時代 警護制度에 관한 史的考察*

김 창 호**

◇ 목 차 ◇

-
- I. 서 론
 - II. 신라시대의 사회적 배경
 - III. 신라의 군제 및 치안
 - IV. 신라시대의 경호제도
 - V. 결 론
- 참고문헌
ABSTRACT
-

I. 序 論

오늘날 우리 나라의 政治制度上 國王 및 大統領, 國家 主要人事 등은 對外的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안으로는 국가와 국민을 保衛하고 헌법을 수호할 책임과 權限을 가진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警護活動은 한 개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保衛하는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완벽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각종 위협이나 테러행위 등으로부터 완벽한 身邊保護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가의 안전보장은 물론 사회혼란을 야기하여 막대한 국가적 손실과 함께 중대한 위협에 처하는 상황이 초래된

* 본 연구는 2000학년도 경기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경기대학교 체육학부교수.

다는 과거사를 돌이켜 볼 때 주요인사에 대한 警護의 중요성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¹⁾

우리 나라는 특히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변에도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현재의 지리적 상황에서 警護機關의 완벽한 業務遂行은 최대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하고 막중한 임무의 警護遂行은 국가체제나 시대를 초월해서 國王이나 國家의 최고권력자 등에 대한 신변보호 및 권위유지를 위해 자연발생적으로 생성하였다.²⁾

특히 절대권력을 가지고 있던 王政時代에는 국왕 개인의 신변보호 뿐만 아니라 왕권 보호 차원에서 강력한 警護手段의 확보가 필요하였고, 새로운 왕권의 창출 때는 반대 세력에 의한 쿠데타나 黨爭 등으로 인한 권력암투가 심화되었을 때는 국왕자신이 신변에 대한 위협을 더욱 심각하게 知覺하기 때문에 강력한 警護, 즉 侍衛組織을 만드는 등 身邊保護에 주력하였다.

특히 신라시대에 있어 국왕을 시위할 목적을 지닌 禁衛兵으로서 侍衛府라는 조직이 있었다. 모든 군사조직이 당시의 권력구조와 불가분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지만 侍衛府는 그 본연의 임무와 기능으로 인하여 특히 왕권과 밀착되어 있었다.³⁾

三國史記 券 40, 雜誌9, 官職(下), 武官條에 侍衛府에 대한 沿革과 定員, 官等規定 등이 일반 군사조직과 구별되어 기록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新羅時代의 兵制上 侍衛府가 차지하는 특수한 위치를 암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으로 思料된다.

古代國家로부터 우리 나라는 警護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만한 독립된 기관이 별도로 분화되지는 않았지만 軍事制度와 司法的 制度에 예속되어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警護業務가 자체적으로 독립되어 遂行된 것이 아니라 각 행정 부서에 위배되는 사항을 스스로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한과 왕실 및 각 기관의 警備, 巡察 등의 업무를 遂行함으로써 현대적인 警護活動과 상당한 關聯性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나라의 경호활동 목표와 상당한 關聯性을 가지고 수행된 新羅時代의 侍衛制度를 考察하는 것은 현재의 警護組織 및 作用과 그 實際上的 運用을 파악하기 위하여 歷史的 變遷의 연구는 매우 意義 있는 일이라 思料된다.

이런 意味에서 本 研究者는 史料가 절대적으로 빈곤함을 인정하면서 關聯史料를 최대한 활용하여 侍衛府에 대한 개념을 王權의 強化라는 전제하에서 세밀하게 分析하고 侍衛府의 기능과 그 조직이 新羅時代의 兵制上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考察해 봄으로서

1) 이충수, 조선왕조 시대 시위제도의 사적 고찰,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7.

2) 이충수, 전계서.

3) 이문기, 신라. 中古의 六部에 관한 고찰, 역사교육논집1, 1980.

그 면모를 뚜렷하게 밝혀 보고자 하는데 研究의 目的이 있다.

Ⅱ. 新羅時代의 社會的 背景

新羅의 歷史的 출발점은 斯盧國이다. 時代的으로 新羅는 1세기부터 약 10세기까지 약 천년의 삶을 누렸고, 領土的으로는 上代에 慶州地域에서부터 始作하여 中代에 洛東江을 跨쳐 小白山脈 以南의 全嶺南地域으로, 그리고 國力의 膨脹期에 百濟와 高句麗를 併呑하여 歷史的으로 최초의 韓半島 統一國家를 이루어 우리 민족사의 正統이 되었다.

斯盧國 時代의 6部 聯合에 의한 농촌 공동체적 고대 국가 사회에서의 統治理念은 巫覡信仰이었다. 따라서 정치형태도 祭政一致상태였다. 그러나 斯盧國은 中代 즉 西紀 500년에 접어들면서 본질적인 변화를 시도하여 지증왕에 이르러 王號도 王으로 고치고 國號도 新羅로 변경하였으며, 原始的 古代國家 체제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국가를 창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지증왕은 漢字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지방행정 조직으로서 州郡을 설치하고 또 牛耕과 水理事業을 전개하여 벼와 보리 등의 主作物을 보급함으로써 농업생산력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改革을 거친 뒤를 이은 法興王은 中央執權의인 貴族國家로서의 統治體系를 완성하게 되었다. 비록 내용을 정확히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중국식의 律令制를 공포하여 모든 국가체계를 정비하였고(17관등, 百官의 公服, 骨品制度 등에 관한 규정), 최초의 중앙정부 부처로서 兵部를 창설하였으며 花郎徒制度를 마련하였다. 이처럼 6세기 들어 靈명한 統治者들을 맞은 新羅는 획기적 발전을 이룩한 농업 생산력을 바탕으로 佛敎敎理에 의한 精神的 武裝을 통하여 百濟와 高句麗의 영토까지 진출하여 國력을 극대화하여 나가게 되었다. 그러나 신라의 이러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百濟와 高句麗 양국으로부터의 대응과 압박을 초래하게 되었고, 新羅는 실로 建國以後 최대의 국가적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의 脫出口가 바로 新羅의 三國統一로 연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新羅의 歷史는 보통 6기로 나누어진다. 1기는 赫居世로부터 흘해사금까지, 2기는 내물 마립간으로부터 지증왕까지, 3기는 法興王으로부터 진덕여왕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제 4기는 태종무열왕으로부터 혜공왕까지, 5기는 선덕여왕으로부터 진성여왕까지, 6기는 효공왕에서 경순왕까지를 말한다. 제1기는 연맹왕국 성립기, 2기는 귀족국가 胎動期, 3기는 귀족세력 연합기, 4기는 전제왕권기, 5기는 호족세력 등장기, 6기는 衰退期, 滅亡기로

구분하고, 三國史記에서는 1기에서 3기까지를 上代新羅, 4기를 中代新羅, 5기에서 6기는 下代新羅로 시대적 구분을 하고 있다. 또 三國遺事에서는 1기와 2기는 上古新羅, 3기는 中古新羅, 4기 이후는 下古新羅로 각각 구분하고 있다.

1. 政治와 社會

新羅는 여러 단계의 陣痛期를 거치면서 中央執權的인 貴族國家를 형성하였다. 사회의 중심세력이 된 것은 王京人이었으며, 王京人 중에서도 身分制에 의하여 특권이 부여된 貴族들, 그 중에서도 王族과 王妃族이 주로 정치, 경제, 문화의 주도권을 가졌던 것으로 추측이 된다. 이렇게 극히 제한된 소수의 貴族家門이 사회적인 지배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 시대의 貴族社會에 대한 실태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으로 骨品制를 들 수 있다. 骨品制는 骨의 等級 즉 血統의 존귀함과 비천함에 따라 政治的인 출세나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특권과 제약이 부여되는 제도였다. 骨品에는 聖骨과 眞骨의 두 骨과 六頭品으로부터 一頭品에 이르는 여섯 頭品이 있었다. 聖骨은 金氏王族 중에서도 王이 될 자격을 가진 최고의 骨品이었으나 뒤에는 소멸되었다. 眞骨도 王族(金氏)이었으나 王이 될 자격은 없었는데 聖骨이 소멸된 뒤에는 왕위에 올랐다. 그리고 옛 왕족이자 王妃族이기도 한 朴氏나 本加耶의 王室인 新金氏도 眞骨에 포함되어 있었다. 같은 王族이면서도 聖骨과 眞骨로 구분되는 이유는 확실치 않으나 母系에 의한 것인 듯하다. 六頭品, 五頭品, 四頭品은 일반 귀족이지만 그 중에서 六頭品은 得難이라고 하여 眞骨 다음가는 身分이었다. 三頭品, 二頭品, 一頭品 등의 骨品들은 뒤에 소멸되어 平人 혹은 百姓이라 불린 것을 보면 일반 평민층이었을 것이다.

이상의 여러 骨品은 政治的, 社會的으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에 차등이 있었던 것이다. 즉 眞骨은 최고 官等인 伊伐滄(角干)까지 昇進할 수가 있으나 六頭品은 제 6관등인 阿滄까지, 五頭品은 제 10관등인 大奈麻까지 四頭品은 제 12관등인 大舍까지 승진의 한도가 제한되어 있었다. 이러한 관등의 제한은 官職에도 영향을 미쳤다. 즉, 部의 장관인 舍은 大啊滄 이상이어야 취임할 수 있었으므로 장관급은 결국 眞骨만이 차지할 수 있는 셈이었다.

部의 차관인 卿은 奈麻에서 啊滄이 되었으므로 六頭品이나 五頭品도 차지할 수 있었으나, 部의 大舍, 舍知, 史는 四頭品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6停을 비롯한 軍部隊의 최고 지휘관인 將軍은 級伐滄에서 伊伐滄이 되었지만 眞骨만이 되도록 규정하였다.

이같이 骨品은 개인의 정치적 출세에 깊은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가옥의 규모도 달랐고, 色服, 車騎, 器用의 제도가 骨品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新羅社會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이 최고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眞骨이었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진골이란 곧 王族과 王妃族이 중심이었으므로 新羅는 王族과 王妃族이 지배하는 사회였다고 할 수 있다.⁴⁾

2. 政治組織

정치적 조직에 있어서 과거의 多元的인 조직을 청산하고 國王을 중심으로 한 一元化된 官等體系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一元化된 官等の 정비가 中央集權的인 貴族國家를 형성하는데 따르는 조치였음을 이해할 수 있다. 滄(干)이나 知의 族長的 전통을 지닌 용어가 특히 눈에 뛰는데 그것이 一元化된 체계를 갖추게 된 뜻은 高句麗나 百濟와 마찬가지로 엮여 있다.

官府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兵部, 司正府, 稟主 등의 官府가 생겨나서 國事를 나누어 맡았다. 그러나 이 시대의 정치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會議制度에 의한 정치가 행해진 사실이다. 그것은 和臼으로서 和臼은 진골출신의 大等으로써 구성이 되고 上大等を 의장으로 하는 會議體이며, 여기서 王位の 繼承, 對外的인 선전포고, 불교의 수용과 같은 종교적 문제 등 국가의 중대사가 결정되었다. 和臼會議는 만장일치에 의하여 의결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특히 국가의 중대한 일을 의논할 때에는 靑松山(東), 于知山(南), 皮田(西), 金剛山(北) 등 신령한 장소를 택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회의제도의 존재는 당시의 정치를 귀족 연합적인 성격을 지니게 하였던 것이다. 한편으로는 內省과 같은 近侍機構를 중심으로 왕권의 專制化 경향이 짝트기도 하였다.

한편 중앙정부의 권력은 지방에까지 미쳐서 행정적인 구획이 설정되기에 이르렀다. 과거에 부족들이 웅거하던 지역에는 城을 쌓고 이것을 지방통치의 중심으로 삼았는데 郡太守라고 하였으나 오히려 일반적으로는 城主라고 불렀다. 뒤에는 이 여러 城을 통괄하는 커다란 행정구획이 생겼는데 이것이 上, 下, 新 등 여러 州였다. 그리고 중앙 귀족들의 근거지인 王京은 6부로 나누는 특별한 行政區劃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 거주하는 王京人은 지방인에 대한 지배적 지위에 있었다.

4) 신동하, 한국 고대국가의 관등제와 신분제, 대동논총, 1983.

3. 軍事組織

中央執權의 貴族國家로 발전함에 따라 軍事組織도 政治制度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국왕의 지휘하에 놓인 전국적인 군대를 편성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국왕은 곧 군대의 최고 사령관이었던 셈이다. 실제 국왕은 스스로 군사를 이끌고 전투에 참여한 일이 흔히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사회적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새로운 군사조직이 이루어 졌다. 국왕 지휘 하의 부대 편성의 구체적 모습은 확실치 않으나 대표적인 것이 9誓幢과 10停이었다.

9誓幢은 神文王 7년(687)에 완성된 중앙의 軍團이었다. 9誓幢의 특징은 新羅人뿐만 아니라 高句麗, 百濟, 靺鞨 등의 異國民까지를 포함하는 점에 있는데 이들은 왕에게 충성을 맹세한 왕의 직속부대였던 것이다. 그 지휘권을 장악하고 있던 6停 대신에 9誓幢이 軍制의 핵심이 되는 軍團으로 등장한 것은 專制王權의 強化策의 結果로 보여진다.

中央의 9誓幢에 대해서 地方에 배치된 중요한 부대가 10停이었다. 10停은 지역이 제일 넓고 또 국방상의 요지인 전국에 고루 배치된 군단들이 국방만이 아니라 警察의 임무도 담당하였을 것임은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다. 이 또한 專制王權을 중심으로 한 신라의 집권적 성격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들 부대는 그것이 설치된 地域人을 군인으로 편성하고 있었다. 다만 지휘관은 王京人이었으며, 특히 6停은 眞骨 출신의 장군이 그 지휘관이 되었다. 이들 군대는 名望軍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군인이 되는 것을 괴로운 의무이기보다도 명예로운 권리로 생각하고 있었다. 신라에는 이 핵심적인 부대 외에도 募兵에 의한 誓幢이 있었다.

이 시대에 王京의 中央軍을 보충하는 것은 신라의 花郎徒같은 청년단체인 것으로 思料된다. 이 花郎徒는 未成年 집단이라는 공동체적인 類題를 이용하였다는데 그 특색이 있다. 씨족사회의 미성년집단에 있어서 그랬던 것처럼 여기서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道義를 연마하였다. 花郎徒가 圓光이 가르친 世俗五戒를 받들었다고 믿어지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또 花郎徒는 名山, 大川을 돌아다니며 노래와 춤을 추어 나라의 발전과 평안을 비는 종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軍事의 기능이었다. 그들은 평상시에 武術을 연마하였다가 위급한 때에는 국가를 위한 전투에 참가하였던 것이다. 花郎徒의 유명함에 대한 金大問의 “花郎世紀”에서

현명한 재상과 충성된 신하가 여기서 솟아 나오고, 훌륭한 장수와 용감한 병사가 이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고 한 것이 화랑도의 실상을 잘 말하여 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地方軍의 조직에 있어서 지방의 행정조직은 곧 그대로 군사조직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지방의 기본적인 행정 단위인 城에는 일정한 수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도의 와 무술을 연마하였다. 그리고 城의 장관인 城主는 곧 군대의 지휘관이었다. 따라서 국가 전체가 마치 하나의 군사조직체인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다.

4. 政治機構

王權이 강화됨에 따라 이를 중심으로 新羅의 정치기구가 정비되었다. 이 시기에 신라의 律令制度가 보다 강하게 정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文武王이 遺詔 속에서 律令格式을 적절히 개정하라고 한 것은 그러한 의도에서였다. 그러나 정치기구가 형식상으로는 대체로 三國時代의 것을 踏襲하였다고 할 수 있다. 가령 兵部, 倉部, 禮部, 調府, 司正府, 理方府 등 중요 官府들은 여전히 그대로 존속하였다. 그러나 각 官府의 官職體系가 丞, 卿, 大舍, 舍知, 史를 기본으로 하는 5단계 조직으로 정비된 것이 보다 官僚的 성격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또 法興王 18년(531)에 설치된 이래 和白會議의 의장으로서 귀족의 대표자 같은 위치에 있던 上大等도 여전히 존재하였다. 하지만 上大等보다도 三國時代 末期인 眞德女王 5년(651)에 설치된 執事部가 핵심적인 行政官府로서 중요시되는 데에 새로운 변화가 엿보인다. 執事部는 귀족적인 전통보다도 王權의 지배를 받는 行政的 성격의 것이었다. 그러므로 執事部의 장관으로서 수상의 직위에 해당하는 中侍(후에는 侍中)는 上大等과 대조적인 위치에 있었던 셈이 된다. 그리고 中侍가 정치적으로 上大等 보다 중요시되었다는 것은 新羅의 정치체제가 專制主義的으로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신라의 발전 과정은 동시에 영토의 확대과정이었다. 확대된 영토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지방조직의 정비가 필요하였다. 신라 지방통치조직의 기본이 된 것은 州, 郡, 縣이었다. 州는 통일 후의 神文王5년(685)에 9州로 정비되었다. 이것은 아마도 군사적인 성격에서 점차 행정적인 성격으로 변화해감을 의미한다. 州 밑에는 郡(太守)이 있고, 郡 밑에는 縣(令)이 있었으며, 그 縣이 다시 村으로 나누어졌다. 그밖에 鄉, 部曲이라는 행정구역도 있었다.

新羅는 神文王 9년에 首都를 達句伐(大邱)로 옮겨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였지만 지배 귀족인 眞骨勢力의 반발에 부딪쳐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地方組織의 정비과정은 결국 新羅가 새로 점유한 지역에 대한 통치기구의 정비과정

이었다. 대부분의 경우에 새로 점유한 토지와 주민은 州, 郡, 縣의 가장 보편적인 행정 구획 속에 편입되었다. 때로는 鄉, 부곡에 편입되기도 하였는데 그 성격은 주, 군, 현이나 별로 다른 것이 없었다. 물론 州의 總管으로부터 縣令에 이르기까지는 중앙귀족이 임명되었다. 그러나 그 밖의 村主라든가 주, 군, 현의 사직에는 토착세력가 출신이 임명되었다. 그러므로 국가에서는 이들 세력가에 대한 일정한 대책이 필요하였다. 그들을 교대로 상경시켜 侍衛케 한 上守吏 제도는 이러한 필요에서 생겨난 것이다.

Ⅲ. 新羅의 軍制 및 治安

1. 官制 및 軍制

신라가 고대국가로서의 집권체제를 갖춘 것은 지증왕을 거쳐 法興王(514-540) 때이다. 즉, 지증왕 때 군현제도가 실시되고 법흥왕 때 중앙관제가 확립되었다.

신라의 官系는 골품제와 연관된다. 신라의 사회구조는 앞에서 대략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王族으로서 성골과 진골, 귀족계급으로서 6두품, 5두품, 4두품이 있었으며 서민 계급으로는 3두품, 2두품, 1두품이, 최하층으로는 노예가 있었다.

성골, 진골의 골품제는 신라 사회질서의 근본 원리가 되고 통치구조의 조직원칙이 되었으며 또한 왕가를 정점으로 하여 身分階序를 확정짓는 제도였다. 이 골품제도에 의한 신분제에 따라서 일정한 관직에 임명되었다. 이 骨品과 頭品은 세습되었으며, 관직만은 1대에 한하였다.

官制는 17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초기에 南堂에서 君臣會議를 하는 제도를 탈피하여 稟主制度가 시행되면서 관제에 따른 중앙조직이 형성되었다. 즉, 稟主가 執事部로 되어 그 長을 中侍, 나중에는 侍中이라 불렀으며 兵部, 司正部, 左, 右 異邦部 등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중앙조직은 신라가 통일되고서도 계속되었다.

지방관제는 초기에 52군, 현이 있어 5주, 2소경, 군, 현 제도가 확립되었다. 그리고 신라의 지방제도는 군사조직, 즉 군영, 군단의 소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주의 장관을 군주라 불렀으며, 군사전략상 필요하면 주의 폐치, 주치소의 이동을 단행하였던 것이다. 나아가 치안과 경비, 순찰에 대한 기능도 주의 군주, 군, 현의 城主가 그곳에 주둔하는 군부대를 활용하였다.

이 지방제도는 文武王 18년경 당의 세력을 완전히 축출하면서부터 재편되어 神文王

7년에 완성되었는데 그 기본은 9주, 5소경, 115군 및 201현으로 된 주, 군, 현 제도였다. 주는 대체로 지금의 도에 해당되는 광범한 지역으로서 옛 신라 본토, 고구려 고지, 백제 고지에 각각 3주가 설치되었는데 주 밑에 군, 군 밑에 현이 속하여 주에는 총관을 두고, 군에는 태수, 현에는 슈을 두어 각각 그 영지를 관할케 하였다.

또한 대가야의 본거지에 금관경, 백제의 옛 땅에 남원경과 서원경, 고구려의 옛 땅에 증원경과 북원경 등 5소경을 설치하였다. 이 5소경은 일종의 특별행정구역으로서 수도를 모방하여 각각 6부제를 실시하였다. 주 및 소경의 장은 중앙정부로부터 파견되어 군사, 사법, 부역, 치안을 겸하였다. 그러나 군사 및 치안에 관한 실무는 長史(각 1인)가, 사법 및 사법경찰에 관해서는 外司正이 지휘 또는 집행하였다.

그리고 郡太守와 縣令은 대개 土豪로서 임명되었다. 또한 국경을 이루게 된 대동강 이남의 지역을 다스리던 특수관청으로 涇江鎮典을 두었는데 이곳의 최고 책임자로 두 상대감을 두어 군사, 경비, 사법, 부역 및 조세 등을 담당케 하였다.

통일 후는 군제도 개편하여 중앙의 9서당과 지방의 10정으로 조정된다. 9서당은 군왕 직할부대로서, 신라인 3, 고구려인 3, 백제인 2, 말갈인 1의 비율로 서당을 이루었다. 10정은 9주의 지방제도 개편과 더불어 다시 편제되었다.

2. 治安制度와 刑制

新羅의 治安制度는 軍事制度로서 설명될 수 있다. 통일 이전 新羅軍은 밖으로는 여, 제 양국과의 항쟁, 안으로는 치안을 유지하는 중책을 다하였다. 통일 후에는 국경을 경비하고 여러 차례 일어난 국내의 반란을 평정하였으며, 전국을 경비하여 치안을 유지하였다. 즉, 신라의 지방통치의 성격은 현저하게 군사적이었으며 치안의 대부분은 실로 軍이 담당하고 있었다.

律令은 고구려를 통한 불교전래와 더불어 法興王 때 확립되었으나 통일이 되면서 唐制를 받아들여 더욱 엄격해 졌다고 볼 수 있다. 초기 법령은 고구려, 백제와 유사하여 반역자는 죽이고 그 가족을 노비로 삼았으며, 감옥이 설치되어 범법자는 지체없이 투옥, 국가의 기강을 엄히 하였다. 新羅律은 10대 범죄 중 5역을 가장 중죄로 다루었으며, 요사한 말로 백성을 호리거나, 관리가 병을 칭하고 일을 소홀히 하거나 공물을 횡령했을 때는 중벌로 처단한다.

신라의 치안제도 중 특이한 것으로 화랑제도가 있다.⁵⁾ 그 기원은 원시 공동체사회로

5) 이종욱, 신라국가 형성사 연구, 1982.

볼 수 있지만 振興王 때 국가의 공인을 받아 심신을 단련하였다. 화랑제도는 성골, 진골 출신의 화랑과 그 밑의 낭도로 구성되는데 화랑 한 사람이 수백의 낭도를 통솔하였다. 이들은 사교단체 및 투사단의 기능을 발휘하며, 귀족군의 보충을 위해 조직된 향토예비군 역할을 하였다. 화랑도는 특히 통일이 될 때까지 중앙이나 지방의 치안을 함께 담당하여 치안담당역의 역할을 다하였다.

3. 新羅의 王室組織

신라는 法興王 3년에 처음 중앙관서로 兵部를 설치하였다. 이것은 兵權을 장악하여 왕권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병부는 訥祗王 때 장군과 같은 것으로 왕 직속의 兵權을 장악하던 직책들을 재편하여 機構化 한 것이다. 이어 眞平王 때에는 위하부, 조부, 승부 등이 증설되었다.

신라의 중앙정계는 왕을 정점으로 하여 그 밑에 전통적인 귀족회의와 새로운 병부 등의 행정기구가 병존하는 이원적인 권력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왕권을 강화하였던 것이다. 삼국통일 전쟁을 통하여 더욱 늘어난 왕실의 재물, 전장, 노비 등을 관장하는 내성이 眞平王 때 따로 설치되었다. 이에 앞서 眞平王 7년에는 대궁, 소량궁, 양궁 등에 각각 사신 1명씩을 두어 관장케 하였던 것을 이때에 와서 통합하여 하나의 정식기구인 내성을 만들었다. 내성은 궁내성과 같은 직능을 가진 것으로 그 장관을 사신이라 칭함으로써 조정의 신하와 궁내성의 신하를 구분하였다.

왕실관련 업무가 통일되어 독립된 관서에서 처리하게 된 것은 그만큼 왕실의 전제력이 강화된 것을 의미한다. 왕실에서 김유신, 김인문에게 본피궁의 재물, 전장, 노복 등을 상으로 하사하였던 것으로 보아 왕실은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국가의 공적인 기구와 분리된 왕실의 사적 세력기반을 조성케 해주었으며 내성장관의 경우 재임 연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 기구가 왕실의 사조직으로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IV. 新羅時代의 警護制度

1. 侍衛府의 成立

武官條의 기록에 侍衛府에 대한 記錄으로

侍衛府 有三徒 眞德王五年置 將軍六人 神文王元年罷監置將軍 位自級滄至阿 滄爲之
大監六人 位自 麻之阿滄爲之 隊頭十五人 位自舍知至 滄爲之 項三十六人 位自舍知至
大 麻爲之 卒 百十七人 位自先 知至大舍爲人 <三國史記, 卷40>

이러한 侍衛府의 군관조직은 일시에 갖추어진 것이 아니라 점차적인 과정을 거쳐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단순히 국왕을 侍衛하는 複數의 武官職이 있었다기 보다는 그 이전에 국왕 측근에서 비조직적으로 그를 警護, 侍衛하던 兵卒集團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관직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신라의 대표적인 警護機關은 侍衛府로서 侍衛府는 명칭 그대로 國王의 경호를 담당하는 軍威兵이었다. 모든 군사조직이 당시의 권력구조와 불가분의 관련성을 갖는 것이지만 侍衛府는 그 본연의 임무와 기능으로 특히 王權과 밀착되어 있었다.

文武王代 이후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6두품 이하의 사람들로 구성된 관료세력들도 神文王의 주된 세력기반 안에 포함시켜 왕권의 專制化에 반대하는 眞骨貴族勢力으로부터 專制王權의 기반인 관료세력을 보호하고 왕권의 강화를 위해 侍衛府의 기능도 한층 강화되었다. 그 하나의 예로 외부의 침략이나 안에서의 반란이 있는 직후에는 제일 먼저 단행하는 조치가 바로 군사제도의 개편이었다. 이것은 文武王代의 왕권강화가 진골귀족의 군사적 기반을 빼앗기 위한 점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쉽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것은 먼저 侍衛府의 改編에서 알 수 있다.

“侍衛監을 罷하고 將軍 6人を 두었다”(三國史記8, 神文王 元年 10月).

이 기록에서 罷라는 용어의 의미는 폐지한다는 뜻으로 神文王은 반란사건이 있는 직후인 원년 10월에 侍衛府를 개편하여 將軍 6명을 두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는 大監職의 상위에 장군을 둔 것이 아니라 侍衛監이라는 官職을 폐지하고 그 대신 將軍職이 설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眞平王 46년(624)에 조직된 이후 眞德女王 5년(651)의 개편을 거쳐서 이때 이와 같이 侍衛府를 개편한데 대하여 기존의 연구에서는 귀족들의 위협으로부터 전제왕권을 보호하는 侍衛部隊를 강화하고 그 격을 높이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⁶⁾ 그렇다면 이때 神文王은 侍衛府에 대한 개편을 통하여 그 기능을 확대하여 단순히 宮城侍衛에 그치지 않고 侍衛府에 군사적 성격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

6) 이기백, 한국사신문, 일조각, 1977.

고, 일반 군사조직의 장군과는 달리 진골독점규정을 폐지하여 진골세력을 배제하려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또 6인의 複數制를 채택한 것은 상호견제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짐작된다. 그리하여 侍衛府는 3徒에 각각 將軍 2인, 大監 2인, 隊頭 5인, 項 12인, 卒 39인씩의 군관조직⁷⁾과 그 예하에 병졸집단을 갖춘 정연한 군사조직으로서 명실상부한 국왕 측근의 직속군사력으로 가능할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侍衛府는 宮城의 守衛와 왕 및 王室勢力 行次 時 修行하는 것이 주된 임무로 역모를 격퇴하거나 반란군을 평정하는 임무를 수행하여 이들은 국왕에게 직속된 군사로서 항상 궁궐 내에 거주하면서 경비에 임하였다.

또한 侍衛府는 국왕이나 왕실세력의 행차에 수행하였고, 국왕 자신의 행차인 사냥이나 巡行에도 수행하였다. 이러한 수행은 국왕이나 왕실세력의 권위를 과시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었던 것이다. 이들의 조직은 으뜸 벼슬인 장군 6명 아래 대감, 대두, 령, 졸의 군병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이들의 관등을 보면 전체 17관등 가운데 장군은 9등급인 금별찬에서 6등급인 아찬까지, 대감은 11등급인 나마에서 6등급인 아찬까지, 대두는 13등급인 사지에서 8등급인 사찬까지, 령은 13등급인 사지에서 10등급인 대나마까지 그리고 졸은 17등급인 조위부터 12등급인 대사까지 분포되어 있었다.

신라시대에 있어 侍衛府는 그 운용에 있어서 병부 또는 병부령의 지휘 통솔 체계에서 벗어난 국왕 직속의 군사조직이었다.

2. 新羅時代 警護制度의 機能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侍衛府는 국왕의 측근에서 왕권의 강화 내지는 전제화의 범주속에서 성립된 하나의 군사조직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侍衛府는 그 명칭에서 단적으로 드러나 있듯이 국왕의 시위를 위한 군사조직으로 그 임무나 기능 역시 국왕의 시위에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를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이 그 성격 및 기능을 요약할 수 있다.

7) 이문기, 신라시대 시위부의 성립과 성격, 일조각, 1996.

1) 宮城의 守衛가 주된 임무였다.

여러 사료에서 알 수 있듯이 崔承老(高麗史, 93)의 時務28條에 포함된 것으로 고려 초기 시위군의 상황을 전하는 것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임무로서 宮城의 宿衛가 기대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이는 신라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新羅本紀 9, 惠恭王4年條에 역모를 꾀하여 궁궐에 침범한 자들을 禁軍이 격퇴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禁軍은 곧 侍衛兵이므로 侍衛府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따라서 侍衛府가 궁궐의 수비를 맡았음을 알 수 있다.

2) 國王 및 王室勢力의 保衛 내지는 戰鬪的 機能을 遂行하였을 것이다.

당시 신라의 국내의 사정으로 보아 통일에 따른 왕권보장과 중앙과 지방에서의 빈번한 모반에 대하여 정치적 안정과 내란의 진압을 위한 보위활동이 그 핵심을 이루었을 것이다. 또한 당의 세력을 축출하기 전까지는 고구려, 백제 유민들의 부흥운동에 대한 저지와 그리고 통일 후에는 당의 세력을 한반도에서 축출하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을, 모든 民軍으로 하여금 전투적 기능을 수행케 했으리라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겠다.

3) 國王이나 王室勢力의 行次에 이들을 扈從하는 기능을 遂行하였다.

三國遺事 3, 塔像 4, 臺山五萬眞身條의 기록에 왕실세력의 행차에 다수의 수행인물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왕자인 寶川과 孝明이 河西府 일대를 유람할 때 각각 千徒 또는 一千人을 領率하고 있었는데 그 무리들 가운데 侍衛가 포함되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국왕이나 왕실세력의 행차시에 侍衛府의 扈從은 이들을 보호하는 실제적인 측면 이외에도 국왕과 왕실세력의 존엄이나 권위를 과시하는 상징적인 기능도 가졌던 것으로 사료된다.

4) 保衛 및 警備機能의 細分化的 機能

(1) 中央侍衛組織의 專門化

중앙에는 왕을 정점으로 왕족을 상층으로 유기적 일체를 이루면서 권한을 행사하였으나 통일기에 가까워지면서 병부(內亂防止)와 司正部(監察과 情報), 左右理方部(犯罪搜查와 執行), 9摺幢(宮城을 中心으로 中央戰鬪部隊), 그리고 侍衛府(宮城警備) 등이 치안

및 경호업무를 담당하는 宮署로서 다른 古代國家보다 더 細分化되고 專門化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地方 侍衛部の 組織化

전국에 9주를 설치하고 주 밑에 군, 현이 있었고, 주에는 總官, 군에는 太守, 縣에는 丞을 두었으며, 小京에는 仕臣을 과견하였는데 이들이 군사, 사법, 치안을 兼業하였다. 그리고 軍事 및 實務에 관한 것은 長史가, 사법 및 사정에 관한 것은 外司正이 指揮 또는 집행하여 보다 세분화되고 조직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自治形態의 運用

特殊部落인 鄉, 所, 部曲은 대개 전쟁포로나 정복지역의 주민이 강제로 이주되어 특수한 勞務나 農産에 종사하는 부락이었다. 그리고 이곳에는 行政官의 設置가 없이 이들 스스로가 治安을 自治의으로 운영해 나갔으리라 思料된다.

(4) 警備機能과 司法機能의 分離

中央에는 宮城의 護衛를 목적으로 하는 侍衛府가 설치되어 독자적인 경비기능을 수행하였고, 司正部(監察과 情報)와 左右理方部는 刑律事務(犯罪搜查와 執行)를 擔當하는 司法機能을 擔當하여 보다 더 業務가 效率的으로 區分化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國家目的의 治安에 더 比重을 둔 權限行使

신라의 국가적 성격이 골품제도에 기반을 둔 왕권의 절대적 우위와 그 전제왕권을 지탱하기 위하여 社會目的的 치안보다는 國家目的의 치안에 치중하였음을 新羅의 刑制에서 알 수 있다.

V. 結 論

以上에서 新羅時代의 侍衛府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侍衛府는 眞平王 46년 大監職局의 설치를 기점으로 하여 조직화되기 시작하였다. 왕은 專制君主로서 立法, 司法, 行政, 軍事에 관한 최고 결정권 및 명령권을 가진 절대권력자로서의 지위, 또는 王權強化策의 한 고리로 이해되지만 골품제의 제약에 따른 진골귀족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眞平王의

현실적 필요성이 하나의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侍衛府는 宮城의 守衛 및 국왕, 왕실세력의 행차시 扈從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국왕의 최측근 군사력으로 일반군사조직이 붕괴되는 下代까지도 존속되었던 군사조직이었다. 이에 따라 국왕의 시위와 왕권보호를 위해 최정에 군사력을 동원하여 시대상황별 적절한 시위활동, 즉 警護活動을 추구하였다.

外侵이나 內亂등으로 왕권이 위협받을 때 더 굳건한 侍衛組織이 구축되었고 그 규모나 능력 면에서도 강화되었다. 이것은 곧 새로운 시대적 환경은 새로운 경호조직을 탄생시키고 끊임없이 변천해 왔음을 문헌고찰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상관성은 나라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까지도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라시대의 侍衛組織은 軍事組織의 일환으로 中央軍과 地方軍으로 나뉜 二元化體制로 운영되었으며, 중앙의 軍事組織은 크게 侍衛部와 9誓幢으로 나눌 수 있고 지방에는 10停 및 그 외 여러 부대가 있었다.

中央에는 國王과 宮城의 護衛를 목적으로 侍衛府가 설치되었으며 神文王 元년에 侍衛監을 罷하고 將軍 6명을 두었고 소속된 兵員의 수는 將軍이하 추까지 합하여 180명이라 하였다.⁸⁾ 侍衛部隊의 규모는 비록 적은 것이지만 이 조직이 전제왕권의 보호에 크게 기여한 최정에 부대였음을 알 수 있었다.

中央軍의 핵심이 侍衛府와 9誓幢인 것에 비하여 地方軍의 중심을 이룬 것은 10정이었다. 10정은 신라시대의 군사적 지방통치의 거점으로서, 원칙적으로 각 주에 1정씩 배치되고 있으나 漢州는 그 지역이 넓고 국방상 요지이므로 2개의 정을 배치하였다. 이는 신라의 주가 군사적인 조직과 결합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위조직이 二元化되고 소수의 인원으로 편성된 것은 궁극적으로 국가의 재정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사료된다. 즉, 정원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적인 부담이 커지므로 제한된 인원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부족한 侍衛人員은 中央軍을 통하여 보충 받게 되고 이들에게는 평시 왕권보호와 관련된 일반 경비임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오늘날 세계 어떤 국가의 政體를 살펴보더라도 그 국가의 國王 및 國家元首는 對外的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對內的으로는 국가와 국민을 保衛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國家元首에 대한 警護는 한 개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국가의 안위를 보호하는 國家安保的 차원에서 완벽 무결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원수에 대한 경호는 경호기관에 부여된 최대의 임무인 동시에 국가의 안위에 직결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8) 이명식, 신라통일기의 군사조직, 한국고대사연구1, 1982.

參 考 文 獻

- 강진철(1969), 新羅의 祿邑에 대하여, 李弘植紀念 韓國史學論叢.
- 강세구(1982), 新羅村主考, 흥익문학 1.
- 김기홍(1990), 三國 및 統一新羅期 稅制의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 김두진(1990), 新羅 眞平王代 初期의 政治改革, 藝檀學報.
- 김두현(1995), 警護學概論, 도서출판 정기.
- 김철준(1962), 新羅貴族勢力의 基盤, 인문과학 7.
- 신동하(1983), 韓國 古代國家의 官等制와 身分制, 대동논총.
- 신형식(1981), 三國史記 研究, 일조각.
- 이기동(1997), 新羅社會史研究, 일조각.
- 이기백(1997), 韓國史新論, 일조각.
- 이문기(1980), 新羅 中古의 六部에 관한 考察, 역사교육논집1.
- 이문기(1996), 新羅時代 侍衛府의 成立과 性格, 일조각.
- 이명식(1982), 新羅統一期の 軍事組織, 한국고대사연구1.
- 이수태(1996), 新羅中代政治史研究, 일조각.
- 이종욱(1999), 新羅骨品制度研究, 일조각.
- 이종욱(2000), 花郎世紀, 김영사.
- 이충수(1997), 朝鮮王朝時代 侍衛制度의 史的考察,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 임병주(2000), 三國王朝實錄, 도서출판 들녘.

ABSTRACT

A Historical Study on the Guard System of Shilla

by Kim, Chang Ho

Department of the imperial guard is of the soldiers organization which is formed in the royal power or the absolute near by a king.

Thus, department of the imperial guard absolutely is showed it is a soldiers organization for guard a king.

We summary the character and the function as followed when we subdivide.

1. The main mission was the guard of the royal palace.

As we know from several historical materials, the defense of the royal palace was an fundamental mission.

Therefore, department of the imperial guard would take charge of the defense of the royal palace.

2. They would carry out throne of king and the royal family or a battle.

As unification, they would carry out guarding for political stability and a suppress probation of internal war in regard to the security and the frequent rebellion in central and locality.

3. They carried out guarding an honored going of a king or the royal family.

We know the fact that there was an honored going of the royal family or many attendants on record.

When a king or the royal family go, guarding of department of the imperial guard had not only protect them but also show off the authority of the royal family.

As a result, when we analysis the substance from studying the guard system of Shilla, though our guard system is imitated the foreign guard system like U.S.A, transcending space-time, the guard system can be found a lot of something common

at the guard principle and a rule.

Today, in looking about a political system of any countries on the world, a king and a ruler of the country represent their country international, have responsibility of protect their nation and a people internal.

Therefore, the guard for a ruler absolutely must carry out at a safety situation. Moreover the guard organ, at the same time is connected directly to a welfare of the nation, so we will have to devote a constant effort.